

2025년도 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I. 일 시 : 2025년 07월 24일 (목) 11:30 ~ 12:30

II. 장 소 : 스콜 양식당 미팅룸

III. 참석자 (대표이사, 이사5명, 감사1명)

대표이사 전 애

이 사 이 호, 미 기, 문 각, 이 남, 정 근

감 사 김 정

IV. 의 안

-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2025년 법인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제3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선임의 건

V. 기타 논의사항

VI.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 장 : 사회자에게 2025년 1차 임시이사회 진행을 요청하다.

사회자 : 간단한 인사와 이사회 진행순서를 설명하고, 25년 1차 임시이사회 이사8명, 감사2명 중 이사6명, 감사1명 참석을 확인하고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 장 : 2025년 1차 임시이사회 개회선언과 개회인사를 하다.

2. 전차회의록 처리

의 장 : 사회자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도록 요청하다,

사회자 : 전차 이사회 회의록(2025년 03월 14일(금))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제1호의안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제2호의안 2025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3호의안 법인 정관변경의 건, 제4호의안 법인 임원(이사)연임 및 신규선임건으로 진행하였으며, 보고사항으로 2024년도 산하시설 추진 실적 및 2025년 주요사업추진 계획보고를 진행함을 설명하다.

의 장 : 전차회의록 처리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하고 전차회의록 채택유무를 묻다.

이 호 이사 : 전차회의록 처리함에 동의하다.

정 은 이사 : 재청하다.

참석이사전원 : 찬성하다.

의 장 :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 정기이사회(2025년 03월 14일) 전차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4. 의안채택 및 심의

의 장 : 의안 심의에 앞서 2025년 1차 임시이사회 의안채택을 제안하고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제1호 의안 법인 정관변경의건, 제2호 의안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3호 의안 법인 임원(감사) 선임 건을 일괄 채택하여 호별 심의하고자하며, 이외 추가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안에 대해 요청하다.

문 각이사 : 추가의안이 없으며, 대표이사 제안한 총 3개의 의안에 대해 채택하여 심의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남이사 :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의 장 : 2025년 1차 임시이사회 의안을 다음과 같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함을 선언하다.

-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변경 건
- 제2호 의안 :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제3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선임 건

가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변경 건

의 장 :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 건을 상정하다.

사회자 : 제1호의안 법인 정관변경 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법”과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고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정관일제조사와 조치요구사항 처리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정관예시에 관한 수정사항등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법인 운영에 제약이 되는 사항등 정비보안을 통한 법인의 원활한 운영위해 정관을 변경코자함을 설명하다.

의 장 : 제1호의안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정관 변경 사유서와 관련 서류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이 호 이사 : 개정관련법등에 맞게 법인정관 변경을 하여 법인을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변경안에 동의하다.

이 남 이사 : 제청하다

의 장 : 이 호 이사의 동의와 이 남 이사의 제청으로 법인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참석이사전원 : 찬성하다.

의 장 :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의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결의사항 : 정관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됨

나. 제2호 의안 :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안)

의 장 : 제2호 의안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안)
을 상정하다.

사회자 : 제2호 의안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안)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 사회복지법인 전원 당초예산 111,152
천원에서 2차추경예산 175,822천원으로 64,670천원 증가
함. 세입에서 기타잡수입(장애인고용장려금) 증가로 세출예산에
서는 사무국 직원 근로기준법적용에 따른 인건비증가,업무추진
비증가,운영비 신규과목(기타운영비)신설, 잡지출 신설 및 사업
비증가로 예산을 조정 편성함.

산하시설 양산시니어클럽은 당초예산9,351,035천원에서 2차 추
경예산 9,362,035천원으로 11,000천원 증가함. 이는 세입에서
후원금수입증가(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교통안전지킴이사
업)과 보조금(인센티브)증가로 인한 세출예산의 사업비 증가로
전반적인 예산을 조정편성함을 설명하다.

의 장 : 제2호 의안과 관련된 배부해 드린 법인 및 산하시설 2차추가
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정 근 이사 : 법인과 산하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작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함을 말하다.

마 기 이사 : 정 근 이사의 동의에 제청하다.

의 장 : 정 근이사 동의와 마 기 이사의 제청에 따라 제2호의안에 대
한 추가의견에 대해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변
경사업계획을 토대로 반영된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
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가결할 것을 요청하다.

참석이사전원 : 찬성하다.

의 장 : 이사전원의 만장일치로 제2호 의안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
하다.

* 사회복지법인 전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비고
111,152	175,822	64,670	

* 산하시설 양산시니어클럽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비고
9,351,035	9,362,035	11,000	

* 결의사항 : 2025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원안대로 가결 됨.

다. 제3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선임 건

의 장 : 제3호 의안은 임원(감사)임기 만료로 인한 연임 및 신규 선임 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한다.

사회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4항과 사회복지법인 전원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 1항, 제18조(임원의 임기등) 1,2항, 제26조(의결사항) 4항과 관련 임원(감사) 연임 및 신규 선임의 건을 제안 설명하다.

제안내용은 「정관」 제18조 제1항에 “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에 “임원 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원 감사(김 정, 강 규)가 2025년 8월 31일자 임기 만료됨. 김-정감사는 연임의사를 밝히셨으며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이 평균 30억이상인 경우 법인 감사 중1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추천을

의뢰하여야함 따라 부산진구청에 추천 의뢰를 받은 김 완 공
인회계사를 법인의 신규 사외감사로 선임하기 위해 관련 근거
에 의거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다고 설명하다.

법인 임원(감사) 신·구대비표

(1) 변경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비고
김정	46.01.04	김정법무사무소	
김규	80.04.24	김규세무사	

(2) 변경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비고
김정	46.01.04	김정법무사무소	연임
김완	83.10.19	회계법인 평 (공인회계사)	신규 (외부추천)

의장 : 그림 제3호의안 2025년 8월31일부로 임기 만료되는 김 정감
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 완 사외감사의 선임전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하다.

이호이사 : 김 정 감사의 유임을 추천하고 신규 김 완 감사의 선임
에 대한 제3호의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함을 말하다.

정근이사 : 이 호이사 동의에 제청하다.

의장 : 이 호이사 동의와 정 근 이사 제청으로 법인 임원(감사)선임
전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의장 : 그림 제3호의안 법인 임원(감사) 선임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일
치로 김 정, 김 완감사가 임기 2년(2025.9.1.~2027.8.31.)
으로 법인의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 결의사항 : 연임 김 정감사/신규 김 완감사로 선임함.

V. 기타 논의사항 및 폐회

의장 : 이외 추가 논의사항이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하다

문각이사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폐회에 동의하다.

이 호이사 : 제청하다.

의 장 : 2025년 1차임시이사회는 문 각이사의 폐회 동의와 이 호이사
의 제청으로 본 회의 상정된 안건 및 기타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참석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
년 1차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12시 30분)

위 사항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장포함)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다.

2025년 07월 24일 (목)

사회복지법인 전원

대표이사 전 애

이 사 이 호

이 사 마 기

이 사 이 남

이 사 문 각

이 사 정 근

감 사 김 정

감 사 강 규